

강원대학교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단
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 장학금 지급 지침

(2023년 7월 20일 제정·시행)

(2023년 11월 15일 일부개정)

(2025년 3월 6일 일부개정)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강원대학교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 사업단(이하 ‘사업단’이라 함)의 강원대학교 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장학금 구분) 장학금은 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

1. 성적장학금 : 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 전공(전공, 복수전공, 부전공 포함, 이하 같음) 학생으로서 성적 우수자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
2. 학업장려금 : 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 전공 학생들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

제3조 (장학금 지급대상) ① 사업단은 예산 및 학업 성취도 제고 등 기대효과를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성적장학금은 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 개설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하여 평균 평점 3.0 이상의 성적을 얻은 자 중에서 선발하여 이수 교과목의 수, 평균 평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지급한다.

③ 학업장려금은 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 개설교과목을 1과목 이상 수강 신청한 자 중에서 선발하여 수강 신청교과목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.

1. 학점당 15만 원이 적용되며, 학기 당 최대 지급 한도는 135만 원으로 한다.
2. 총 지급액이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액은 감액 조정될 수 있으며, 장학생 선발 및 지급에 대한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.
3. 학업 장려금은 교내·외 장학금과 중복수혜할 수 있다.

제4조 (신청 및 지급) ① 장학금 수혜를 희망하는 학생은 교내·외 장학금 공지를 확인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[별지서식 제1호] 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사업단장 및 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 전공주임교수는 예산 및 학생들의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 지급 기준 및 지급액을 정한다.

제5조 (장학금 환수) 장학금을 수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급 금액을 환수 조치한다.

1. 수혜 대상 학기 중 휴학, 제적 또는 퇴학 등으로 학적이 변동된 자
2. 수혜 대상 학기 성적 확정 이후 학점이 F인 자. 이 경우 학점이 F인 과목의 학점에 대응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함.

제6조 (기타)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사업단장과 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

과 전공주임교수가 협의하여 정한다.

- 부칙(2023.07.20.)-

- 제1조 (경과규정) ① 미래융합가상학과로 운영 중인 지식재산권학과의 학과명이 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로 변경되기 전까지 이 지침에서 ‘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’는 ‘지식재산권학과’로 본다.
- ② 미래융합가상학과로 운영 중인 지식재산권학과의 학과명이 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로 변경되기 전까지 이 지침에서 ‘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 전공주임교수’는 ‘지식재산권학과 전공주임교수’로 본다.
- ③ 미래융합가상학과로 운영 중인 지식재산권학과의 학과명이 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로 변경되기 전까지 이 지침에서 ‘데이터·지식재산융합학과 전공 학생’은 ‘지식재산권학과 개설교과목 수강 학생’으로 본다.